

2025년 인디게임 지원(성장기업/스타트업-법인) 사업비편성기준

□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(정산기준 포함)

비목	세목	내역
인건비 (110)	보수 (01)	<p><용도></p> <p>1. 정규직에 대한 보수</p> <p>2.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</p> <p><산정 및 정산 기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관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•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
	상용 임금 (03)	<p><용도></p> <p>1. 무기 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</p> <p>2.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</p> <p><산정 및 정산 기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관기관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•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<p><용도></p> <p>1.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(전문가활용비)</p> <p><산정 및 정산 기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•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 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* 본 사업과 관련되어 개인(외부 전문가)과 외주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함
	일반 용역비 (14)	<p><용도></p> <p>1.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아트, 애니메이션, 사운드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</p> <p><산정 및 정산 기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(수탁기관)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*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전문분야 용역에 한함

□ [참고] 예산작성 유의사항

가. 공고문 내 지원조건, 사업안내서, 한국콘텐츠진흥원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」, 「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」 필독 후 작성 (중요)

나. 사업자 부담금은 총사업비의 최소 10% 이상으로 책정해야하며, 현금 부담으로, 보조금 관리 계좌와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관리해야 함. 사업자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추후 사업비 정산 시 정산범위에 포함 됨

* 지원조건 : 국고지원금(90% 이내) + 사업자부담금(10% 이상/현물 제외, 현금만 인정) 편성

다. 업체가 추후에 현금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해 작성

* 지원내용 : 참여인력 인건비, 운영비(일반수용비, 일반용역비)

① 인건비

- 인건비 편성에 대한 비율 제한은 없음
- 보수 및 상용임금 모두 직접고용 기준으로, 4대보험 가입 필수
 - ※ '대표자' 인건비를 국고 지원금 내에 편성할 수 없음 (단, 사업자 부담금으로 편성 가능)
- 일반 직원의 경우, 지원금 및 사업자 부담금 모두 편성 가능
 - ※ 통상임금(기본급 및 고정수당)에 대해서만 책정 및 지급 가능
(근로계약서상에 통상임금에 초과근무수당, 상여금, 연월차수당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작성)
 - ※ 4대보험은 근로자 개인 부담분은 인정되나, 사업자 부담분은 불인정
 - ※ 사업비조정 종합심의 시, 사업수행 인건비 산정 기준 확인 (실급여기준 과대계상 불인정)

② 일반수용비

- 전문가활용비(내부 직원 지급 불가)

③ 일반용역비

- 일반용역비는 국고지원금의 최대 50% 이내 반영 가능
 - ※ 민간보조사업자가 물품 및 용역 구매(2천만원 초과)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달청, 지자체에게 계약 의뢰
 - ※ 사업비조정 종합심의 시 조정 가능

라. 위 세목 외의 항목은 불인정함. 신청업체는 국고지원금을 본 프로젝트를 위한 용도에만 이용해야 하며,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예산항목은 인정하지 않음(복리후생비, 특근매식비, 휴일 근무수당, 차량 유류대 및 차량 관련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기재 불가)

마. '사업비 산출내역'의 예산합계는 '사업비 산출 세부내역'의 합계와 동일하여야 하며, 각 세부내역별 산출내역에 단가, 횟수, 인원수,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 (천원단위 미만 절사)

바. 본 사업신청서 내 '사업비 산출내역'은 평가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선정 시 세부 산출내역서 별도 제출 예정

□ [참고]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

- 유흥업종 : ‘한국표준산업분류’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, 무도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
- 위생업종 : 이·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
- 레저업종 :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당구장, 헬스클럽, PC방, 스키장
- 사행업종 :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
- 기타업종 : 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점

□ [참고]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활용비 지급 기준

가. 학술행사비

(단위 : 원)

대상	등 급	지급금액	비 고
발표자, 사회자, 토론자	1등급	500,000	대학총·학장, 주요 기관장급
	2등급	400,000	대학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 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
	3등급	300,000	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 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

* 지급금액 범위 내에서 편성

나. 강사료

(단위 : 원)

대상	등 급	지급금액	비 고
강사	1등급	300,000/시간	대학총·학장, 주요 기관장급
	2등급	200,000/시간	대학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 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
	3등급	100,000/시간	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 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
보조강사	-	50,000/시간	현장지도 및 실습보조 등

* 원격지 참여 등 여비를 지급해야할 경우 여비지급규칙에 따라 편성

* 지급금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,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는 별도 지침에 따름

다. 자문비_국외는 실소요액으로 반영

(단위 : 원)

대상	기 준	지급금액	비 고
전문가	일반 자문비	100,000원/시간	1일 최대 3시간 국외 실소요액
	전문 자문비	실소요금액	법률, 세무, 회계, 위험관리, 경영 컨설팅 등에 관한 자문

* 지급금액 범위 내에서 편성

바. 원고료·교정료·번역료 (A4 1매 기준)

(단위 : 원)

대상	등급/기준	지급금액	비 고	
원 고 료	집필자	1등급	40,000	· 대학원 및 대학교(전문대학 포함)전임강사 이상 ·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· 언론기관, 전문기관,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기관의 임원(집행간부) 및 부장급 이상 · 위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
		2등급	32,000	해당분야의 학식과 지식이 있는 1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
디자인료	PPT기준	50,000		

표 정 료	단순교정	국문	2,000	
		외국어	4,000	
	윤문교정	국문	3,000	
		외국어	6,000	
번 역 료	번역자	외국어→ 한국어	30,000	1장미만 번역 시 외국어 → 한국어 5만원 한국어 → 외국어 10만원
		한국어→ 외국어(영,일)	60,000	
		외국어→ 기타외국어	60,000	
	감수료	-	-	필요시 번역료의 20%반영

- * 원고료는 원고내용, 등급, 사안의 중요성, 원고 집필자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 120% 범위 내로 가중치 적용
- * A4 1매당 기준은 200자 원고지 4장으로 800자 이상 이어야 함(한국어, 일본어, 중국어 기준)
- * 번역 결과물이 영어·기타 언어인 경우 A4 1매당 기준은 230단어 이상 이어야 함
- * 지급금액 범위 내에서 편성

사. 통역료 (1일 6시간 기준)

(단위 : 원)

대 상	등급/기준	지급금액	비 고
동시통역 (전문통역사)	1등급	1,000,000	경력 10년 이상
	2등급	800,000	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
	3등급	600,000	경력 5년 미만
외국어도우미	외국유학생	120,000	

- * 2시간 이하는 기준액의 80% 내로 지급
- * 6시간 초과 시 최대 2시간 까지 시간당으로 지급 (동시통역 15만원, 도우미 2만원)